

2020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안내

신입생모집 주요사항

※ 「2020학년도 신입생모집 주요사항」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우리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2020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 : 475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거제동) 부산교육대학교 교무처 입학팀
 - 입시 문의(교무처 입학팀) : ☎ 051-500-7561~3, 7565~6 FAX 051-500-7589
 - 부산교대 홈페이지 : <http://www.bnue.ac.kr>
 - 부산교대 입학홈페이지 : <http://enter.bnue.ac.kr>
-

I. 수시모집

1. 모집인원

구분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최저학력기준
정원내	학생부종합(초등교직적성자전형)	104	- 1단계(2배수) : 학생부(교과·비교과) 100% - 2단계 : 1단계 성적 60%(실질반영비율 71.4%) + 면접 40%(실질반영비율 28.6%)	해당 없음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89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전형)	4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4		
정원외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4		
	학생부종합(장애인등대상자전형)	12		
	학생부종합(저소득층학생전형)	5		
계		232		

- ※ 정원내 전형의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 정원내 수능위주(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 정원외 전형의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 정원외 해당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하며 전형 방식은 정시 수능위주(일반전형)과 동일함
- ※ 대학정원 조정에 따라 정원내 전형 및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저소득층학생전형)의 모집정원은 축소될 수 있음(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의거)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초등교직적성자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 부산·울산·경남권 정규 고등학교 3년 전(준)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 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전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단, 부모 모두 한국인인 자녀로서, 부모의 이혼 후 재혼으로 인해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생겨난 경우는 제외함) -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준)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자 -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준)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준)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지원자격 유형] ① 6년(중1학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 부모 거주)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해당 기간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② 12년(초·중·고 전(준)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부모 비거주)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학생부종합 (장애인등 대상자전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 애) 또는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종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학생부종합 (저소득층 학생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지원자격 유형]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②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③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④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⑤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⑥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⑦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⑧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⑨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이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지원자는 해당 성적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대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특수목적고 :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3.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사정단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비고
1단계(서류평가)	• 서류종합평가 : 100%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한국사 영 역 동일) • 필요 시 해당자에 한해 서류검증 및 현장방문 실시
2단계(면접평가)	• 1단계 점수 : 60%(실질반영비율 71.4%) • 면접 점수 : 40%(실질반영비율 28.6%)	

※ 1단계 전형 :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 학생부종합(초등교직적성자전형)과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은 각 단계별 남·여 성비 적용(남·여 어느 쪽도 65%를 초과하지 못함)

4. 인재상 지표

● 인재상 지표 “한새-COMPASS” 한새인으로 성장을 이끄는 나침반

인재상		핵심 역량
C	창의 지성(Creative intelligence)	융·복합 역량, 유연한 사고력
O	교직 가치관(Occupational value)	바른 교사상, 교육적 가치관
M	상호 협력(Mutual cooperation)	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P	실천 의지(Practicing will)	적극적 참여 경험, 실천 의지
A	학업 역량(Academic competence)	기본적 수학능력, 학업 성취도
S	공감 인성(Sympathetic character)	공감 능력, 타인 배려
S	주체적 리더십(Self-leadership)	자기주도성, 지도력

5. 1단계 서류평가

- 우리대학 인재상 지표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함

평가 항목		평가 내용
P	실천 의지(Practicing will)	적극적 참여 경험, 실천 의지
A	학업 역량(Academic competence)	기본적 수학능력, 학업 성취도
S	공감 인성(Sympathetic character)	공감 능력, 타인 배려
S	주체적 리더십(Self-leadership)	자기주도성, 지도력

6. 2단계 면접고사

- 우리대학 인재상 지표를 바탕으로 3명 내외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평가함

평가 항목		평가 내용
C	창의 지성(Creative intelligence)	융·복합 역량, 유연한 사고력
O	교직 가치관(Occupational value)	바른 교사상, 교육적 가치관
M	상호 협력(Mutual cooperation)	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교육부 및 우리대학 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전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에 탑재된 모집요강을 확인 바람

II. 정시모집(‘나’군)

1.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구분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최저학력기준
정원내	수능(일반전형)	156	- 수능78.4% + 학생부(교과)17.6% + 면접3.9%	해당 없음
정원외	수능(농어촌학생전형)	미지정		
	수능(장애인등대상자전형)	미지정		
	수능(저소득층학생전형)	미지정		

- ※ 정원내 전형의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 정원내 수능(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 정원외 전형의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 정원외 해당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하며 전형 방식은 정시 수능(일반전형)과 동일함
- ※ 대학정원 조정에 따라 정원내 전형 및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수능(저소득층학생전형)의 모집정원은 축소될 수 있음(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의거)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수능(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수능(농어촌학생전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전(준)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지원자격 유형] ① 6년(중1학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 부모 거주)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해당 기간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② 12년(초·중·고 전(준)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부모 비거주)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해당 기간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수능(장애인등대상자전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종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에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수능(저소득층학생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지원자격 유형]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②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③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④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⑤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⑥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⑦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⑧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⑨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구분	전형요소			계
	수능	학생부(교과)	면접	
배점	400	500	100	1,000
기본점수	0	410	80	490
실질반영점수(실질반영비율)	400(78.4%)	90(17.6%)	20(3.9%)	510

※ 각 단계별 남·여 성비 적용(남·여 어느 쪽도 65%를 초과하지 못함)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한국사 영역 동일)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있는 자

적용대상 고교 졸업학년도	학년별 반영비율(100%)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100%)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2017. 2. - 2020. 2.	40%	30%	30%	100%

※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과목 : 전학년 전교과목 석차등급

- 학교생활기록부 적용 제외자

전형대상	반영방법
1. 2016년 2월 및 그 이전 졸업자 2.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3. 검정고시 출신자 4.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5.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6.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7. 기타 고교 전 학년 교과성적 중 일부가 없는 자 및 교과성적이 석차등급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성적 : 우리대학 자체기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점수를 활용하여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함

5.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구분	수능영역별 반영비율(100%)			
	국어	수학(가/나)	영어	탐구영역(사회/과학)
과목지정	-	자유	-	자유(2과목 평균)
활용지표	백분위		등급환산점수	백분위
반영비율	25%	25%	25%	25%

※ 수능 유형(가형, 나형) 간 가산점 없음

※ 탐구영역 점수 반영방법 : 1개의 영역에서 2과목의 평균점수 반영

※ 탐구영역은 지정과목이 없으며 서로 같은 분야의 I + II 과목 선택 가능(예 : 화학 I, 화학 II)

6. 면접고사

- 3명 내외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 제시된 글을 읽고 답변 및 의견 제시를 하며, 면접위원은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교직태도 및 사명감, 가치관 및 인성, 의사소통능력, 사고력 영역 등을 평가

※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은 교육부 및 우리대학 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전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에 탑재된 모집요강을 확인 바람